의안번호	
의 뢰 인	서지영 의원
회 답 일	2024.09.24.
추계번호	24C386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1,000만원(연평균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안 제4조)	42	42	42	42	42	210	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정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폐교·해산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학교 및 교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의 지원 4. 제12조에 따른 경영자문의 제공 및 지원 5. 제18조에 따른 학생의 편입학 및 연구자·교직원 보호 지원 6. 제20조에 따른 청산의 지원 7. 그 밖에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의무규정
		(제3항)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 제7조 (재정진단의 실시)	(제1항)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1.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교직원·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라고 의심되는 경우 2. 그 밖에 재정진단 결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및 대학에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항)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12조 (경영자문)	(제1항) 교육부장관은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전담기관에 의한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2항) 경영위기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5	안 제17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된 경우,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제2항에 따른 해산장려금의 범위, 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8조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제1항) 국가는 제16조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제16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면직된 연구자가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한 학술·연구개발 활동 참여에 있어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7	안 제20조 (해산·청산의 지원)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 인가의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전담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8	안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조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임차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제16조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2조(벌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구조개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안 제23조(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	
2	안 제6조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	・제정안에 따른 전담기관을 운영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경상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현시점에서 필요한 전담인력의 수와 운영비 단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1)2)]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3	안 제7조 (재정진단의 실시)	×	·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경영자문을 실시·지원할 수 있음 ·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의 지원받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485백만원)[3]"과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경영자문(4,810백만원)[4] 지원중이므로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관련 절차가 현행제도와 유사하게 규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의 제안이유[5]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확대 또는 신규사업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
4	안 제12조 (경영자문)	×	
5	안 제17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	· 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의 재원이 국가의 재정일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해산장려금의 한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해산될 학교법인의 수와 그 잔여재산 규모, 잔여재산 중 사학진흥기금으로 귀속될 부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6	안 제18조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	·현시점에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노력으로의 정책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7	안 제20조 (해산·청산의 지원)	×	(제1항) 현시점에서 지원 유형과 기준·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추계에 필요한 사업량이나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
		×	(제2항)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을 '24년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실시 중이나, 제정안의 제안이유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확대 또는 신규사업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교육부 소관 사업 중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등 채무변제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4,45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1) 제정안에는 전담기관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①안 제6조에 따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8	안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 제정안의 구조개선 조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조례를 통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증가분을 일률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기 곤란
9	안 제22조(벌칙) 안 제23조(과태료)	×	· 제정안에 따라 구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거나 이행계획을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수 및 그 금액 등을 예상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의 산출이 곤란하여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닌 내용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소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를 위해 위원 정수는 최대 정수인 15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고등교육

전담기관의 지정 주체가 교육부장관이고, ②전담기관의 업무로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전담기관의 구조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전제함

2) 다만, 안 제6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전담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하며, 전담기관의 업무 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비는 후술할 각 근거 규정에서 비용추계 여부나 추계 금액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것으로 함

3) 사립대학 대상 재정진단 수행 및 진단 보완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됨

4)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경영자문(30개교)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경영자문 지원 전문용역비와 운영비로 구성됨

5)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이하 생략)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수당 지급 대상 위원인 것으로 가정

-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참석비의 경우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은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정

○ 회의 횟수는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심의 대상 및 내용에 유사성이 있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실적을 참고하여 연 12회(월 1회)로 가정

- 제정안에 따른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및 구조개선 조치, 폐교·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경우 대학 설립 기준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립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심의 내용상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의 회의 횟수를 준용
- 행정안전부의 「2023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6]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경우 총 8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제정안에 따른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연간 회의 횟수를 12회(월 1회)로 가정

○ 수당 단가의 경우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7]에는 명시적인 금액이 없으나, 해당 지침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8]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6) 대학설립심사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현황(2023년 6월 기준)

명칭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및 성격	교육부 자문위원회	교육부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기능	대학 설립 기준, 대학 통폐합에 관한 사항 심의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항(정상화추진실적 평가, 정상화 추진계획안) 심의
위원	총 10명 (위촉직 10명)	총 11명(위촉직 11명)
회의 개최실적	출석 8회	출석 10회

주: 회의 개최실적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2023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행정안전부)

7)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작성 세부지침을 포함한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있는 점을 고려하여 25만원으로 하고, 해당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 장시간 회의에 따른 추가비용, 회의안건 검토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운영비용은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에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1,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4,200만원)

○ 2026~2030년 연간 :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14명) × 연간 회의 횟수(12회) × 수당 단가(25만원)

[표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4조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42	42	42	42	42	210	42

Ⅳ. 부대의견

❑ 없음

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